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2-149호 민원 이행 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⑨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시 ○○동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위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사업자를 선정(배전반 차단기 및 전력간선 교체공사 업체선정 등 4건)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2. 4. 12.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취지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2. 9. 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제2022-149호, 민원 이행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2. 4. 4.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시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사업자를 선정(배전반 차단기 및 전력간선 교체공사 업체선정 등 4건)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4. 12. 위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2022. 6. 9.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기한: 2022. 6. 24.)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사업자를 선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감독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2022. 6. 13.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시 ○○동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위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사업자를 선정(배전반 차단기 및 전력간선 교체공사 업체선정 등 4건)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2. 4. 12. 제기한 국민신

문고 민원의 취지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¹⁾.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동주택 역시 관리소장 이○○에 의해 입찰비리가 만연해있다. 피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찰비리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불법행위의 유형과 행태가 동일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2)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K-apt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전자입찰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사업자를 선정(배전반 차단기 및 전력간선 교체공사 업체선정 등 4건)한 건은 위 K-apt 시스템에는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허위 등록한 가운데 실제로는 입찰종류와 낙찰방식을 일반경쟁입찰에 최저가낙찰제로 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법외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채 과태료 부과처분 없이 묵인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2022. 6. 9.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업체(○○개발)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으로 정한 2022. 6. 24. 이후 관계 법에 따라 처

1)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를 “과태료 처분 요청 4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2년 4월 12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민원문의 취지대로 과태료를 처분하라”라는 제결을 구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해석함.

분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 법령 등

-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 2)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93조, 제102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2. 4. 4.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시 ○○동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사업자를 선정[① 배전반 차단기 및 전력간선 교체공사 업체 선정, ② 소방시설 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③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업체 선정, ④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동) 업체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2. 4. 12. 위 민원에 대하여 “위 민원에 대하여는 당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등에 따른 위반 여부 등을 제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 후,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유선 등으로 회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2. 4. 12.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022. 5. 2. 해당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자료제출 요청 목록

가. 입찰공고문 및 K-apt에 공고한 내용

- ① 배전반 차단기 및 전력간선 교체공사 입찰공고문 및 K-apt 공고내용(2021년)
- ② 소방시설 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업체 입찰공고문 및 K-apt 공고내용(2020년)
- ③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및 K-apt 공고내용(2019년)
- ④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업체 선정(104동) 입찰공고문 및 K-apt 공고내용(2019년)

나. 위 공사 추진에 대한 입주자대표 회의록

4) 피청구인은 2022. 6. 8.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 제출기한: 2022. 6. 24.)를 하였다.

5)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전통지에 이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2022. 8. 29. 현재).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2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인바, 과태료 부과

는 직접적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제3자에 대해서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과태료 관련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3자가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 목적 달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의무이행을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